

損害保險會社의 財務狀態 安全性 確保와 早期警報시스템 運營

李 相 和

(保險監督院 · 損害保險部長)

◀ 目 次 ▶

- I. 머리말
- II. 損害保險會社의 財務狀態와 經營分析
 - 1. 國內損保社의 財務狀態 現況
 - 2. 經營分析의 必要性和 運營實態
- III. 損害保險企業에 있어 財務健全性 確保와 保險監督情報시스템(IRIS)
 - 1. 損害保險企業에서 財務健全性 確保의 必要性
 - 2. 主要國家에서의 損保社에 대한 監督情報制度의 內容과 運營
- IV. 우리나라 損保社의 財務健全性和 保險 監督情報시스템의 導入 및 運營方向
 - 1. 制度의 導入背景과 過程
 - 2. 制度의 運營現況과 改善方案
- V. 맺는말

I. 머리말

1960년대부터 1970年代에 이르기까지 우리 經

濟의 政策目標은 經濟成長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保險資金에 대해서는 內資動員의 目的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經濟發展을 위한 資金의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쏟게 되었다. 특히 製造業中心의 產業構造의 高度化和 成長을 위하여 다른 產業部門으로부터의 支援은 물론 희생을 요구하는 事例도 있었다. 한편으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계속적 推進이 經濟發展을 이룩하게된 주요 모티브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經濟成長 一邊倒로 富의 편중현상이 나타나 社會的 · 經濟的 갈등이 심화된 점이 없지도 않다. 여기에서 階層間 · 地域間 · 產業間 發展隔差로 인하여 社會的으로 그늘진 部分에 있는 一部 國民들은 좌절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 社會的 問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社會現象은 經濟的 · 社會的 · 文化的 成長過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들과 같은 現實이 드러나는 것은 經濟發展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걸림돌이 되어 우리 經濟의 成長을 阻害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완벽하게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問題點을 방지해서는 안되므로 최대한의 努力을 경주하여 問題의 素地를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政策當局과 大部分의 企業家들은 종전의 고식적인 思考方式에서 탈피하여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 솔직하고 겸허하여야 한다. 政府當局도 오늘날 우리 經濟規模가 워낙 거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介入範圍와 件數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當局과 企業은 대내외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經濟環境에 대처하면서 民間主導型으로 자율적인 企業활동을 전개하여 國際競爭力을 배양함과 아울러 經濟構造의 調整을 도모하여야 한다.

金融機關이라 하더라도 分類觀點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通貨金融機關과 非銀行金融仲介機關으로 대별한다. 1960年代에 이르기까지 金融仲介機能의 대부분이 生命保險, 郵便貯金, 信託 등으로 되어 있었고, 1970年代에 들어와서 非制度金融市場을 制度圈으로 수용하게 되어 政府가 金融政策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目標을 용이하게 이룩할 수 있는 可能性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制度金融圈에서와 마찬가지로 金融產業을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해서 統制하거나 또는 誘導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리하여 그후 金融機關의 活動에 대한 효율적 管理과 아울러 金融產業의 育成發展을 위해 政策當局의 努力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더욱이 金融產業이 自由化와 國際化라는 큰 과제를 안고 2000年代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金融機關의 民營化 내지 設立許可基準의 緩和, 自律競爭力의 向上을 위한 制度改善과 補完, 綜合金融化에 의한 兼營化의 擴大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단계에 와있다.

非通貨金融機關인 開發機關, 貯蓄機關, 投資機關, 保險機關 중 保險產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生保企業만을 保險機關으로 보아 그 실적치를 集計·評價하고 있다. 損害保險이 제외되고 生命保險만이 金融機關에 포함된 이유는 生命保險의 性格上 長期保險이고 營業保險料 중에서 貯蓄性保險料가 차지하는 比率이 아주 높으므로 長期에 걸쳐서 活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保險契約準備金の 積립으로 형성된 保有資産의 대부분이 金融資産이기 때문이었다.

종래에 損害保險은 生命保險에 비하여 金融資産의 規模가 적어 金融機關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損害保險의 占有率이 점차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長期貯蓄性 損害保險의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급속히 成長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損害保險產業도 金融機關에 포함시켜 他金融機關과의 실적치와 비교하여 評價分析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保險會社도 企業이기 때문에 經營合理化를 도모하여 適正利潤을 확보하면서 資産運營面에서는 流動性·安全性·社會性 내지 公共性을 유지함으로써 保險者의 責任과 企業精神을 구현하여야 한다. 保險企業은 財務諸表上 數值面의 變動內容을 分析評價하여 현재의 經營狀態는 물론 앞으로의 經營方向을 설정하는 計劃樹立에 活用할 수 있다. 經營分析에 있어서 그 대상을 財務諸表에 국한시키지 않고 財務狀態를 포함한 전반적인 經營實態를 파악하는데 두어야 한다.

保險企業의 信用評價는 信用에 대한 分析을 거쳐 企業의 信用度を 파악하는 것이다. 保險加入者

의 立場에서는 保險會社의 支給能力과 財務構造의 健全性を 確實히 알아보고 그 內實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去來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保險加入者가 保險企業의 財務構造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分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國家에 따라서는 保險會社에 대한 財務狀態를 一般國民들에게 매스콤 등을 통해 알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 保險加入者 個人이 스스로 자기의 能力껏 거래하는 保險會社에 대해 財務上의 信用度를 확인과악하게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保險加入者중에서는 특히 個人保險契約者의 경우에 保險會社와 동일한 水準에서 保險契約의 체결과 保險事故의 處理를 기대한다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保險會社는 保險事業에 관한 限 專門企業이기 때문에 어떤 特定問題가 제기되는 때에는 保險會社와 保險加入者의 양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事件의 處理結果가 保險加入者에게 不利하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保險商品의 去來가 無形의 서비스를 팔고 사는 것이므로 保險事故가 발생하여 保險金을 받을 경우에는 문제의 정도가 論難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나 말썽이 된다고 하더라도 保險金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비교해서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加入者가 保險會社와의 保險契約를 체결하여 契約의 效力이 지속되는 期間中이거나 이미 保險事故가 발생했는데 아직 保險金을 수령하지 못한 狀態에서 保險會社가 파산하게 되었거나 도산의 危機에 직면하여 심각한 財務狀態에 놓여 있을 경우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保險事故가 생기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가 임게 될 財産被害가 심각하여 保險契約者도 동일하게 파산의 위험을 받게 될는지 모른다. 이와 같은 事態는 그

保險會社와 去來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保險加入者들에게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힐 것이다.

美國에서는 1970年代初에 全美保險監督官協議會(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 N.A.I.C.)에서는 早期警報制度(Early Warning System)를 채택하여 州保險當局에 권고·시행하였고 그 후 損保社와 生保社에 대하여 保險監督情報制度(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 I.R.I.S.)로서 發展的 轉換이 이루어졌다. 이 IRIS制度는 保險會社의 財務狀態의 健全性 여부를 확인하여 保險會社의 破産可能性을 방지함은 물론 保險加入者에게도 被害가 확대될 素地가 있기 때문에 이들 事態發生을 예방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早期警報制度를 운영하고 있는 內容은 保險事業 全般에 걸친 經營評價로 되어 있다. 즉, 保險會社에 대한 綜合經營評價制度和 유사한 방법으로 구성된 점 이 많아 兩制度간에 限界의 정립이 필요하다.

II. 損害保險會社의 財務狀態와 經營分析

금년도 財務部의 業務計劃 중에서 保險에 관련된 事項으로서 保險産業의 內實있는 發展을 추진하기 위해 保險會社의 經營評價制度를 개선함으로써 責任經營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保險監督院의 主要業務計劃 중에는 損害保險의 經營內實化를 도모하기 위해 經營評價基準를 개정함으로써 綜合經營評價制度를 보완하고, 經營分析과 評價結果 問題點을 발견할 때에는 早期警報를 실시할 수 있도록 早期警報運營指針을 제정함과 아울러 隨時 經營分析評價에 의한 財務上 危險을

경보하는 경우에는 經營改善計劃을 징구하고 是正命을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保證保險의 引受方法과 求償制度를 개선함으로써 保證保險會社의 언더라이팅실적을 정상궤도에 놓을 수 있게 하고, 또한 損害保險의 事業費 配分基準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方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오랫동안 未解決의 分野로 남아 있어 損害保險産業의 고질적인 問題가 되어 왔던 自動車保險의 經營合理化를 위한 多방면의 制度改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1. 國內損保社의 財務狀態 現況

企業活動에 있어서 財務管理(financial management)는 人事·生産·市場活動과 같은 管理機能을 수행하는 一部門이 되는 것인데, 保險會社에서는 經營活動의 一環인 財務管理가 라인業務의 영역으로 보아도 좋다. 특히 保險企業에서의 投資活動을 保險加入者에 대한 配當을 위한 財源確保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도 投資利益이 있어야 하므로 財務管理는 保險企業의 業務로서 중차대한 役割을 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財務活動은 資金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運用을 통해 企業의 전반적인 經營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1〉과 〈표-2〉에서 生命保險과 損害保險의 原受保險料를 대비한 실적을 보면 1992年 3月末 현재 全體保險料 2兆 900億원 중에서 損害保險의 占有率은 19.6%로서 4兆 7,210億인데 반하여 生命保險은 80.4%로 損害保險과 비교하여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損害保險의 1992年 3月末 原受保險料 占有率은 前年同期에 비하여 1.8% 포인트가 늘어났고 增加率은 損害保險이

31.5%이나 生命保險은 16.9%로 낮은 편이다. 지금까지 損害保險과 生命保險의 지나친 保險實績의 逆調現象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長期損害保險料의 높은 成長率(1992. 3月 現在 前年同期對比 55.3%의 保險料 增加率을 시현함)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외형성장을 위한 실적경쟁이 별다른 意味가 없다는 事實을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募集從事者들의 생각은 아직도 외형실적에 주력하고 있는 편이다.

〈표-3〉에 의하면 保險種目別 1992年 3월말 保險料의 構成比는 自動車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중 48.4%로 가장 많고, 長期保險이 26.7%이며, 그 다음으로 保證保險, 海上保險, 火災保險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1992年 3月の 순사업비는 1兆 404億원으로 되어 있고, 준비금이 증가되어 1兆 985億원이 되었다. 또한 〈표 1-2〉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保險營業損失은 4,203億원이며, 投資利益이 4,109億원이고, 또한 總營業損失은 14億원이며 當期純損失은 97億원이 되었는데 韓國保證이 306億원의 결손이 생겼고 大韓再保가 61億원의 적자를 보였다.

〈표-4〉에서 보면 1992年 2月 현재 損害保險의 總資產은 5兆 6,927億원인데 이중 運用資產은 4兆 6,352億원으로 8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現·預金은 9,631億원으로 16.9%이고, 有價證券은 2兆 1,057億원 33.7%이고, 貸出金 1兆 1,932億원 21.0%, 不動產 3,732億원 6.5%로 구성되어 있고, 其他資產은 保險未收金, 貸借保證金, 移延資產, 其他등으로 金額으로는 1兆 574億원이고 構成比는 전체의 18.6%를 점유하고 있어 生命保險의 其他資產이 4.6%에 지나지 않는 점과 比較하여 損害保險의 構成比가 높은 事實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損害保險의 負債 및 資本을 보면, 責任準備金과 非常危險準備金を 합친 保險契約準備金은 1992年 2月 현재 4兆 3,652億원이고, 여기에 業法 97條 準備金, 保險未支給金, 貸貸保證金, 其他負債 등으로 總 5兆 1,831億원이고, 資本面에서는 總納入資本金은 2,364億원이고 資本準備金과 再評價積立金으로 되어있는 資金剩餘金은 2,375億원이며, 또한

利益準備金, 任意積立金, 前期移越利益剩餘金, 當期純利益으로 구성된 利益剩餘金은 356億이며 總資本은 5,095億원이다. 그래서 負債 및 資本總額은 總資產과 동일한 5兆 6,927億원이 되었다.

우리 保險市場에서는 營業利益을 실현하려는 의도는 부질없는 努力으로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外國의 保險先進市場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렇다고 해서 營業활동에까지 소극적으로 되어서는

(표 1-1)

保險會社別 損害保險損益狀況(1)

(단위 : 억원)

구 분	원수보험료		순매출액		순보험금		순사업비		준비금증가	
	'90	'91	'90	'91	'90	'91	'90	'91	'90	'91
동 양	3,066	4,419	2,479	3,228	1,296	1,813	670	871	794	835
신동아	2,136	2,918	1,760	2,419	799	1,100	499	638	605	885
대 한	2,015	2,583	1,686	2,156	995	1,346	429	548	412	456
국 제	1,553	1,933	1,241	1,544	651	888	373	461	318	374
고 려	1,551	2,002	1,308	1,637	766	967	361	475	254	298
제 일	2,076	2,799	1,613	2,270	829	1,206	467	611	450	623
해 동	1,057	1,255	881	1,108	489	723	265	321	187	137
안 국	5,239	7,139	4,044	5,825	1,939	2,659	969	1,276	1,569	2,594
현 대	4,547	6,298	3,787	5,252	2,114	3,021	887	1,204	989	1,451
력 키	4,040	5,486	3,042	4,061	1,746	2,310	750	953	830	1,210
자 보	5,444	6,787	4,731	5,777	2,447	3,094	1,157	1,415	1,303	1,602
(소 계)	32,724	43,619	26,572	35,277	14,071	19,127	6,827	8,773	7,711	10,465
재 보	5	6	2,198	2,603	1,426	2,170	791	868	127	17
대 보	2,420	2,590	1,677	2,079	1,355	1,509	405	491	148	376
한 보	439	796	66	251	51	340	70	138	10	117
(합 계)	35,588	47,011	30,513	40,210	16,903	23,146	8,093	10,270	7,996	10,975
외국사	308	292	259	284	103	162	126	134	57	10
A.H.A	232	213	197	208	77	122	97	99	48	9
CIGNA	76	79	62	76	26	40	29	35	9	1
계	35,896	47,303	30,772	40,494	17,006	23,308	8,219	10,404	8,053	10,985

註 : 1991년도 실적중 3월분은 추정치임.

순 매 출 액 : 경과보험료(수입보험료-지급보험료+전기이월 미경과보험료-차기이월 미경과보험료)

준비금 증가 : 당년도말 보험계약준비금-전년도말 보험계약준비금

안되며 최선의 노력과 열성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의 실현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資産運用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資本市場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종전의 株式投資에서 債券投資로 方向轉換을 시도하고 있다. 保險會社에서 운용하는 資産은 거의 대부분이 保險加入者의 委託財産임에 비추어 保險會社는 이들 加入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전혀 投資收益을 도외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므로 保

險資産을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證市에서의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종래의 保險企業 財務管理는 資金運營에 중심을 두고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資金調達源을 찾아서 확보하고 資金에 여유가 있으면 금융기관에 예치해두거나 다음에 착수할 事業에 투자하는 등 資金運用이 비교적 소극적인 면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保險企業 活動은 收益性을 추구하는 것과 아울러 資金管理

(표 1-2)

保險會社別 損害損益狀況(2)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영업손익		투자 손익		총영업이익		당기순이익	
	'90	'91	'90	'91	'90	'91	'90	'91
동 양	(281)	(291)	313	320	31	29	25	23
신동아	(143)	(204)	204	268	61	64	52	49
대 한	(150)	(194)	167	208	16	14	11	12
국 제	(101)	(179)	130	186	29	7	25	5
고 려	(73)	(103)	89	120	16	17	12	15
제 일	(133)	(170)	146	177	13	6	9	5
해 동	(60)	(73)	63	69	3	(4)	5	(1)
안 국	(433)	(704)	475	746	43	42	27	39
현 대	(203)	(424)	248	466	45	41	33	29
력 키	(284)	(412)	335	473	51	61	45	46
자 보	(176)	(334)	221	389	45	55	17	28
(소 계)	(2,037)	(3,088)	2,391	3,422	353	332	261	250
재 보	(146)	(452)	287	379	140	(73)	125	(61)
대 보	(231)	(297)	395	313	165	17	91	13
한 보	(65)	(344)	32	40	(32)	(304)	(34)	(306)
(합 계)	(2,479)	(4,181)	3,105	4,154	626	(28)	443	(104)
외국사	(27)	(22)	35	36	8	14	4	7
A.H.A	(25)	(22)	25	27	0	5	(1)	1
CIGNA	(2)	0	10	9	8	9	5	6
계	(2,506)	(4,203)	3,140	4,190	634	(14)	447	(97)

註 : 1991년도 실적중 3월분은 추정치임.

당기순이익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 법인세(방위세, 주민세 포함)

〈표-2〉

生·損保 原受保險料 對比

(단위: 십억원, %)

구 분	1991	1990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생 보 사	19,369(80.4)	16,574(82.2)	16.9
손 보 사	4,721(19.6)	3,590(17.8)	31.5
계	24,090(100.0)	20,164(100.0)	19.5

註: ()는 구성비율임.

1991년도 실적 중 3월분은 추정치임.

〈표-3〉

種目別 原受保險料 및 市場占有現況

(단위: 백만원, %)

구 분	1990			1991			비 고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화 재	221,465	16.7	6.2	263,386	18.9	5.6	
해 상	285,572	25.8	8.0	298,466	4.5	6.3	
적 하	175,628	33.4	4.9	173,339	-1.3	3.7	
선 박	96,532	22.2	2.7	103,702	7.4	2.2	
기 타	13,412	-18.5	0.4	21,425	59.7	0.5	
자 동 차	1,772,857	19.7	49.4	2,289,391	29.1	48.4	
보 증	285,296	45.6	7.9	338,041	18.5	7.1	
특 종	199,196	28.7	5.5	257,918	29.5	5.5	
외국원보험	11,575	66.8	0.3	19,002	64.2	0.4	
장 기	813,626	112.3	22.7	1,263,838	55.3	26.7	
합 계	3,589,587	36.0	100.0	4,730,042	131.8	100.0	

註: 1991년도 실적중 3월분은 추정치임.

에 있어 流動性을 확보하고 또한 保險經營面의 安全性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으므로 監督의 관점에서 그 비중을 높여 관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保險企業의 財務管理面에서 公共性에 대한 것인데 다른 産業分野와는 달리 保險企業은 社會的 公益性을 실현하여 保險加入者뿐만 아니라 一般大衆의 危險管理에 대한 지원을 통해 危險의 除去 내지 輕減을 도모하

여 社會에 공헌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保險會社들은 經營內部에 관련된 問題點들을 해소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어 社會의 기여와 복지향상에 대해서는 한정된 一部會社를 제외하고는 눈을 돌릴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保險企業의 社會的 責任은 다른 産業分野의 역할 수행과는 상이한 次元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表-4)

損害保險 貸借對照表

資 産

(單位： 百萬圓)

區 分	運 用 資 産										其 他 資 産						總 資 産
	現・預金	構成比 (%)	有價證券	構成比 (%)	貸出金	構成比 (%)	不動産	構成比 (%)	小計	構成比 (%)	保險未收金	貸借保證金	移延資産	其他	小計	構成比 (%)	
1986	295,130	19.9	401,559	27.0	145,490	9.8	178,968	12.1	1,021,147	68.8	263,251	47,561	250	151,514	462,576	31.2	1,483,723
1987	472,439	24.2	639,445	32.7	207,407	10.6	192,254	9.8	1,511,545	77.3	252,031	56,830	259	135,473	444,575	22.7	1,956,120
1988	654,988	24.6	967,470	36.4	338,928	12.7	215,145	8.1	2,176,531	81.8	264,508	89,549	272	129,095	483,424	18.2	2,659,955
1989	788,522	21.7	1,449,184	39.8	531,814	14.6	258,671	7.1	3,028,191	83.1	296,992	156,958	1,253	158,619	613,823	16.9	3,642,014
1990	841,881	17.4	1,906,541	39.4	875,759	18.1	297,420	6.2	3,921,601	81.1	475,130	228,719	940	209,577	914,366	18.9	4,835,967
1991. 2	853,848	18.3	1,829,255	39.3	836,287	18.0	290,024	6.2	3,809,414	81.8	439,125	219,664	1,656	186,861	847,305	18.2	4,656,719
9	899,418	16.7	2,009,182	37.4	1,070,403	19.9	339,308	6.3	4,318,311	80.3	520,472	275,300	766	261,117	1,057,655	19.7	5,375,966
10	894,305	16.5	2,036,832	37.6	1,103,353	20.4	345,236	6.4	4,379,726	80.9	492,526	283,391	766	259,189	1,035,872	19.1	5,415,599
11	911,776	16.6	2,061,899	37.6	1,127,941	20.6	349,437	6.4	4,451,053	81.1	438,947	288,621	765	261,380	1,034,713	18.9	5,485,766
12	904,339	16.2	2,087,867	37.5	1,145,004	20.5	365,747	6.6	4,502,958	80.8	512,234	298,485	765	258,235	1,069,718	19.2	5,572,675
1992. 1	927,880	16.6	2,066,582	37.0	1,169,018	20.9	370,140	6.6	4,533,621	81.1	483,435	308,161	764	262,875	1,055,235	18.9	5,588,856
2	963,083	16.9	2,105,709	33.7	1,193,194	21.0	373,235	6.5	4,635,221	81.4	489,714	303,373	763	263,599	1,057,448	18.6	5,692,669
一般社	815,737	17.9	1,534,693	33.7	1,161,862	25.5	321,812	7.1	3,834,104	84.3	266,193	242,409	308	205,763	714,673	15.7	4,548,777
保保社	84,114	16.0	259,019	49.1	21,895	4.2	32,724	6.2	397,752	75.4	32,421	55,189	437	41,433	129,480	24.6	527,232
再保社	51,617	9.0	295,394	51.5	6,589	1.1	18,698	3.3	372,299	64.9	187,124	90	-	14,092	201,306	35.1	573,605
外國社	11,615	27.0	16,602	38.6	2,848	6.6	-	-	31,066	72.2	3,976	5,685	18	2,310	11,988	27.8	43,055

(註) 1988. 4월 이후에는 外國社 實績을 포함한 統計임.

負債 및 資本

(單位：百萬元)

區 分	保險契約準備金			業法 97條 準 備 金	保 險 未支給金	貸貸保證金	其他負債	負債計	資 本								負債 및 資本總計
	責任準備金	非常危險 準 備 金	小計						資本剩餘金		利益剩餘金			資本計			
									資 本 準 備 金	再評價 積立金	利 益 準 備 金	任 意 積立金	前期移越 利益剩餘金		當 期 純利益		
1986	548,242	163,658	1,055,466	2,311	298,089	28,473	99,400	1,483,739	64,300	1,723	11,863	3,943	18,199	△86,044	△14,000	△16	1,483,723
1987	690,585	227,420	1,416,581	2,450	292,726	35,187	117,966	1,864,910	100,520	39,889	14,390	4,930	24,119	△115,473	22,835	91,210	1,956,120
1988	1,574,232	330,618	1,904,850	2,441	293,499	38,486	149,229	2,388,505	139,865	126,490	21,338	14,724	25,239	△114,315	58,110	271,451	2,659,955
1989	2,203,261	370,260	2,573,522	2,488	332,739	46,091	187,145	3,141,985	215,192	220,687	15,018	22,433	51,620	△92,313	67,391	500,029	3,642,014
1990	3,043,016	422,493	3,465,509	3,733	533,182	54,011	229,086	4,285,521	236,428	222,506	15,018	31,362	82,062	△81,679	44,749	550,447	4,835,967
1991. 2	2,986,778	417,839	3,404,618	3,873	474,184	52,962	180,217	4,115,854	236,428	222,506	15,018	31,362	82,062	△79,931	33,420	540,865	4,656,719
9	3,532,868	449,938	3,982,805	3,873	575,262	55,535	258,750	4,876,225	236,428	222,506	15,018	42,368	97,685	△82,956	△31,309	499,741	5,375,966
10	3,614,988	459,677	4,074,665	3,873	557,288	56,513	239,182	4,931,521	236,428	222,506	15,018	42,368	97,685	△83,018	△46,910	484,078	5,415,599
11	3,720,503	460,753	4,181,256	3,873	537,605	57,916	229,243	5,009,893	236,428	222,506	15,018	41,858	97,685	△83,172	△54,961	475,873	5,485,766
12	3,812,027	444,565	4,256,592	3,873	540,611	58,811	239,244	5,099,130	236,428	222,506	15,018	42,368	97,685	△83,259	△57,202	473,545	5,572,675
1992. 1	3,845,534	447,495	4,293,029	3,873	521,428	62,834	227,548	5,108,712	236,428	222,506	15,018	42,368	97,685	△83,493	△50,368	480,144	5,588,856
2	3,912,507	452,668	4,365,174	3,873	523,091	64,142	226,844	5,183,125	236,428	222,506	15,018	42,368	97,685	△83,493	△20,968	509,545	5,692,669
一般社	3,273,983	349,411	3,623,394	2,626	331,318	53,643	172,689	4,183,670	174,343	186,599	14,808	27,834	22,435	△80,721	19,809	365,107	4,548,777
保保社	365,194	38,937	404,130	1,058	42,659	1,702	26,680	476,229	35,000	-	210	2,501	45,000	△3,859	△27,850	51,003	527,232
再保社	251,343	57,530	308,873	188	145,018	8,797	22,673	485,550	24,085	35,907	-	12,033	30,250	86	△14,306	88,056	573,605
外國社	21,988	6,790	28,777	-	4,096	-	4,803	37,676	3,000	-	-	-	-	1,000	1,379	5,379	43,055

(註) 1) 1988. 4월 이후에는 外國社 實績을 포함한 統計임.

2) 企業合理化積立金は 利益準備金에 包含되었음.

3) 株式請約證據金は 資本準備金에 包含되었음.

2. 經營分析의 必要性和 運營實態

保險企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會社들은 財貨나 用役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직접 제조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접으로 이미 생산된 것들을 매입하고 판매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企業活動의 具體인 내역은 企業에 따라 상이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企業運營을 위해서는 生産設備의 마련, 숙련된 技術者와 충분한 人力의 確保, 企業運營을 위한 資本의 確保 등은 물론 우수한 經營技法을 구사할 수 있는 經營管理者를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企業經營에 필요한 制約要素는 일정한 會計年度에서 投入·算出된 結果를 財務諸表上에 구체적으로 資産과 負債 및 資本의 상태가 數値로 표시되며, 또한 일정기간의 收益, 費用, 利益, 損失 등이 損益計算書에 나타난다.

그런데 保險企業에서 一般製造業體와는 달리 生産施設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設備投資部門이 다른 製造業체와는 비교하기에는 낮은 수준에 있기는 하나 컴퓨터 등과 같은 事務自動化의 推進으로 固定設備에 투입되는 費用支出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企業의 經營分析은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등의 財務諸表와 기타 財務資料에 표시된 計數와 比率를 상호비교하고 分析함으로써 企業의 財務狀態와 經營結果에 대한 評價가 가능하게 된다.

企業의 經營分析은 美國에서 銀行業者가 貸出審査를 할 경우에 그 貸出을 받을 고객의 信用 또는 返濟能力을 측정하기 위해 貸借對照表를 받아 분

析한 것이 동기가 되어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經營分析으로까지 발전되었다. 그래서 美國에서는 經營分析(business analysis)을 일반적으로 財務分析(financial analysis) 또는 財務諸表分析(financial statem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財務諸表의 分析은 企業의 외부인이 하던 것이 점차 내부자인 經營者에 의해서도 행해지게 되었다. 財務管理를 合理的으로 수행하여 流動資産과 流動負債를 상호관계에서 비교분석하면 부채상환능력인 財務流動性을 검토파악할 수 있다. 損益計算書를 分析하는 것은 企業의 經營活動能力과 그 成果를 표시하는 利益率을 측정하는데 필요하다. 나아가 이후 같은 企業의 財務狀態分析은 財務管理를 위한 目的과 함께 經營자의 經營管理에 도움이 되는 原價能率을 측정하기 위해 原價에 대한 分析(cost analysis)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¹⁾

이러한 保險會社의 經營狀態와 經營活動의 結果는 財務諸表에 나타난 계수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保險會社의 經營狀態와 經營活動의 結果는 財務諸表에 나타난 計數를 파악하면 알 수 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은 이들 計數를 분석하여 經營활동상황을 추정하고 그 활동결과를 판단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經營活動의 進路와 方法을 결정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또한 財務諸表에 표시된 關係계수를 상호비교하고 분석하는 財務分析은 經營分析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美國에서 처음 시작된 經營分析은 다른 國家들에서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기나라에 적합한 經營分析方法을 채택·적용하기 위해서 分析에 관한 理論과 實際를 自國의 현실에 입각하여 연구하여

1) 任翊淳, 現代經營分析: 理論과 實際, 博英社, 서울, 1986. pp3~4

Edison E. Easton & Byron L. Newton, Accounting and Analysis of Financial Data, 1958. pp272~274

왔다.

銀行業分野에서 출발한 經營分析이 고객기업의 支給能力이나 信用狀態를 파악하기 위해 信用分析을 행하다가 投資者, 其他 債權者들도 거래기업의 財務分析에도 활용하게 되면서 外部分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여기에 企業의 外部人이나 내부의 經營者 스스로가 자기 企業의 財務狀態를 분석하는 內部分分析이 점차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原價分析까지 하게 되었다. 또한 同一業種內의 다른 企業의 재무상태를 상호비교하면서 자기기업의 상대적인 財務狀況에 대해 알아보는 經營診斷에까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經營分析이 이론적으로 經營學에서 중요한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음은 물론 銀行業, 證券業, 保險業, 信用調査機關, 기타 金融機關들이 實務上 運營에 크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保險業界, 특히 損害保險業에서는 초기단계에서 經營分析이 필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方面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개척되어야 할 實情에 있다.

損害保險分野에서 經營分析의 管理·運營은 各社간에 月末報告書의 一般統計를 상호교환하여 自社의 실적은 물론 다른 損保社의 財務資料를 비교 분석하여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分析作業은 各社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주로 보험료실적과 사업비의 分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保險監督院에서는 감독업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綜合經營評價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損保社들의 經營에 不實要因이 없게 하고 재무상 우려되는 指數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關係社에 알려 經營管理上的 改善措置를 취하게 하는 한편 이

部門을 예의주시하고 당해회사와 협의를 계속하면서 問題點을 해소시켜 나간다.

우리 保險產業分野에서는 綜合經營評價는 말할 것도 없고 早期警報制度에서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財務部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經營分野의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財務狀態에 대한 集中管理와 統制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관심의 焦點이 분명하지 않아 損害保險會社의 經營에 대한 효율적인 監督이 충분히 이루어 지기에 미흡하리라고 생각된다.

Ⅲ. 損害保險企業에 있어 財務健全性 確保와 保險監督情報시스템(IRIS)

企業活動에 있어서 어느 한 部門이라도 중요하지 않는 부문은 없으며, 企業經營의 한 分野인 財務部門도 다른 部門과 같이 건전하게 運營되어야 經營全般이 양호한 狀態에 있게 된다. 損害保險企業의 經營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는 財務構造가 건전한 상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바탕을 근거로 하여 美國, 英國, 日本, 獨逸 등의 주요국가에서 주로 損保社들의 財務面에 대한 監督行政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損害保險企業에서 財務健全性 確保의 必要性

어느 產業部門에서나 마찬가지로 保險經營活動은 직접·간접으로 資金問題와 결부되어 있어 資金의 조달과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財務管理의 目的이라고 할 수 있다. 損害保險의 企業活動은 財務管理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經營全般에 걸쳐 기획, 조정, 통제 등으로 조화를 도

모하여 마찰이나 갈등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財務管理의 역할은 기업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機能을 수행하는데 있으므로 財務管理의 지향하는 바는 企業經營에서 추진하는 方向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現代企業의 財務活動 내지 財務管理는 企業에서 필요로 하는 資金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된 資金을 효과있게 운영하는데 두고 있다. 企業의 財務管理者가 수행하는 機能은 종래에는 정확한 財務記錄을 유지하고 財務內容을 보고하고 企業의 現金水準을 관장하는 資金中心의 財務管理로 제한되어 왔다. 그래서 企業資金의 流動性(liquidity)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필요한 追加資金을 中·長期的 資金形態로 조달하는 것을 주된 機能으로 삼았다.

최근에는 財務管理의 性格 및 財務管理者의 機能은 이러한 資金管理나 資金調達의 한정된 機能에서 벗어나 조달된 資金이 구체적인 資產의 형태로 전환되는 投資와 企業의 전반적인 評價와 관련되어 있는 資本의 最適配合(best mix of financing)에까지도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現代企業의 財務管理에 있어 자본코스트와 자본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資本調達決定(financing decision)과 資本의 運用을 중심으로 하는 投資決定(investment decision)이 그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資本調達決定에 있어서 자본코스트의 극소화와 投資決定에 있어서 투자가치의 극대화가 조화를 이루어 企業利益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保險企業에서도 財務管理는 물론 중요하지만 一般企業의 그것과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고 保險監督法과 監督行政에서 保險事業은 어느 部門보다도 강한 規制를 받고 있다. 이것은 保險經營의 安全性追求가 監督行政의 第一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保險事業의 經營에서는 一般企業經營에서 중시하는 資本調達業務는 財務活動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지만 반면에 支給準備金の 算定業務와 축적된 資本의 法的規制에 의한 投資業務는 매우 중요하다.²⁾ 그리고 企業活動에서 經營狀態를 파악하는데는 經營分析의 主體에 따라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資產運營에 대한 기본자세가 상이하게 취해질 수 있다.

保險事業의 특수성에 입각한 保險投資의 原則을 보면, 첫째로, 安全性(stability)을 들 수 있는데 保險企業이 영속적으로 건전하게 經營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企業은 경기상태, 정책변동, 시장여건, 기타 여러 가지 경제조건의 변동에 따라 流動性和 收益성이 변동되면서 영속적으로 安定性を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財務構造가 健全해야 流動性和 收益성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

保險企業이 적립하는 여러 가지 準備金 등은 保險事故의 발생시에 保險契約者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義務를 이행하려는 데서 적립되고 信託財産의 性格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목적을 위해 資產運營을 수행하는데 있어 安全性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들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保險金の 支給 등에 응할 수가 없어 保險制度에 대한 신

2) 申守植, 保險經營論, 貿易經營社, 서울, 1984, pp.486~487.

池清, 現代 財務管理論, 貿易經營社, 서울, 1978. p.23.

趙海均, 保險經營論, 博英社, 1976. 서울, p.259.

뢰가 떨어지고 保險會社의 信用에도 금이 가게 된다. 保險財産運用의 安定性은 保險資金의 유지를 위해서는 물론 保險經營面에서도 꼭 필요하다.

둘째로는 收益性(profitability)에 관해서이다. 收益性의 문제는 기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利益實現 여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業種에 따라 評價結果가 다르게 마련이다. 損害保險에서의 利益發生의 정도는 資金의 규모, 事業의 性格 등에서 生命保險에서 보다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損害保險會社도 事業活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률의 利益을 내지 못하거나 損失의 규모가 크게 되면 企業으로서의 流動性和 安全性을 해치게 되므로 극히 유의해서 保險事業을 영위해야 된다.

셋째로는 流動性(liquidity)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企業의 短期支給能力에 관한 것으로 現金支給이 필요한 경우에 바로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한다. 未支給保險金, 未支給手數料 등의 여러 가지 流動負債에 대해 지급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現金, 預金이나 기타 流動資産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야 그 保險會社는 支給能力을 유지하고 信用을 지킬 수 있으므로 流動性의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로는 公共性의 원칙에 관한 것으로, 保險會社의 投資에 있어서 특수한 原則이다. 이것은 保險會社의 社會的 責任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축적된 保險資金은 대부분이 保險契約者의 돈이기 때문에 公共的 色彩가 강하고, 資金運用은 國民經濟의 각 분야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公共性이 강조되고 있다.

일반기업의 經營目標은 利潤의 극대화에 있으나 保險事業에 있어서는 利潤追求와 安定追求의 2가지 목표 중에서 후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보호라고 하는 保險商品의 판매는 보험계약자에게 안전성(보장성)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保險事業에서 추구하는 收益性의 目標과 安全性의 目標가 財務管理側面에 계속해서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어느 때에 가서는 保險企業의 財政이 불안해지고 支給不能狀態에 빠질 수 있다.³⁾ 여기에서 損害保險企業이 안전한 保險經營을 유지하기 위해서 財務狀態의 정확한 파악과 동시에 經營分析을 통해 건전한 財務活動이 요구되고 있다.

2. 主要國家에서의 損保社에 대한 監督情報制度의 內容과 運營

各國에서 시행하고 있는 保險監督政策은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實質的 監督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 편이다. 保險事業에 대한 國家監督은 經濟構造, 經濟秩序, 保險發達의 程度와 速度에 따라 감독의 強度가 國家마다 다르다.

가. 美 國

美國에서는 保險事業에 대한 規制監督은 法律上 또는 行政上으로 聯邦政府보다 州政府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各州에 따라 規制의 強度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全體州 또는 몇개 州에서 영업하는 損害保險會社는 불편한 점들이 있으나 이를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全州에 걸쳐 公的인 保險政策이 완전히 무시되지 않으며, 州間에

3) 申守植, 前掲書, p.488 및 pp.530~534.

協助가 필요한 部分은 協力を 도모하고 있다.⁴⁾

保險事業은 1945年 McCarran Ferguson法에 의해 기본적으로 聯邦政府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으나 근래 聯邦議會에서 McCarran Ferguson法の 폐지와 보험사업에 대한 聯邦政府의 관여강화를 목적으로 각종 法案이 여러 議員으로부터 반복제출되고 있다. 이것들은 州政府에 의한 保險會社의 支給能力 규제를 강화하여 경영파탄에 이르는 보험회사가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된 것이 많다. 이에 대한 보험업계와 各州保險廳의 반대는 대단하며 연방정부의 구체적 對策도 전망이 불투명하여 法案成立의 가능성이 적다. 各州는 그 관할지역내의 保險事業에 대한 규제의 責任을 지고 州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독행정을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保險事業은 州政府에 의해 규제받고 있으나 各州의 보험감독행정을 합리적으로 平準化하고 統一化하며, 효과적으로 보험사업의 규제에 관련되는 의견을 교환할 목적으로 各州의 保險廳長官이 모여 1871年에 NAIC를 창설하여 보험에 관한 상호 意見交換과 각주간의 통일된 政策을 마련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保險事業에 대한 檢査權은 現場檢査, 正味資産에 대한 正味保險料의 比率, 保險監督情報시스템의 3가지 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IRIS는 美國 各州의 保險廳이 실시하는 支給能力分析을 지원하려는 目的으로 NAIC가 제안하여 도입된 早期警報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의 一種이며,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제도가 완성된 것은 1978년이었다.

NAIC에 의한 早期警報시스템은 1971年에 保險會社의 업무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한 財務比率로서 개발되었다. 이렇게 작성된 財務統計數值 중에서 통상의 범위 이상의 수치가 많은 保險會社 順序로 목록을 만들어 그 순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그 후 1975年에 NAIC에 의해 損保社와 生保社에 대한 2가지 종류의 유사한 개별시스템이 발표되었고, 1978年 이후 IRIS로서 各種統計比率의 時系列分析, 회사간의 分析을 통해 各州保險廳의 分析業務와 保險會社 자체의 自社財務分析에 이용되고 있다.

IRIS에서는 損害保險會社의 營業성과 재무내용을 11개의 比率(ratio)로 나타내어 保險會社의 支給能力과 財務狀態를 분석하고 있다. 지표가 되는 比率은 근래 支給不能이나 경영파탄을 일으킨 保險會社의 比率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고 經濟社會의 環境變化에 따라 변경되고 있다.

IRIS의 11개 指標중 異常值인 지표가 많은 保險會社에 대해서는 保險廳 檢査官이 긴급검사나 年次計算書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IRIS는 보험청 자체의 상세한 財務分析이나 現場檢査에 대체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經營上 危機에 당면한 保險會社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效果가 있지만 統計值 자체는 어떤 결정적 意味를 갖는 것이 아니며, 또한 IRIS를 면허발행이나 갱신 또는 그 밖에 保險監督의 유일한 기준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保險廳長官은 광범한 強制執行力을 갖고 있으므로 保險會社들을 州保險廳의 勸告에 따르게 하고

4) 大韓損害保險協會, 主要國의 保險監督法規 및 制度, 通藝文藝社, 서울, 1992.

이 자료는 日本損害保險協會에서 先進損害國家들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調査資料를 集大成하여 出版한 “保險監督法規 海外調査報告書”를 번역한 것이다.

있으며 이러한 強制力으로 民事上의 罰金, 過怠料, 免許停止, 取消 등이 있다. 州保險法들에는 법률위반에 대한 광범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한 경우는 드물다.

1985년에 개정되어 損害保險事業에 적용되는 IRIS指標는 다음과 같다.⁵⁾

(1) 綜合的 比率(overall ratios) : 異常值

比率 1	正味資産에 대한 正味保險料(premium to surplus)	300% 이상
比率 2	正味保險料의 增(減)收率(change in writings)	±33% 이상
比率 3	正味資産에 대한 正味資産助成額(surplus aid to surplus)	25% 이상

(2) 收益性 比率(profitability ratios)

比率 4	2個年の 損害率+經營率-運用資産利益率(two-year overall operating ratios)	100% 이상
比率 5	運用利回率(investment yield)	6% 이하
比率 6	正味資産變動率(change in surplus)	50% 이상~10% 이하

(3) 流動性資産 比率(liquidity ratios)

比率 7	流動資産에 대한 負債比率(liabilities to liquid assets)	105% 이상
比率 8	正味資産에 대한 代理店未收金比率(agents balances to surplus)	40% 이상

(4) 準備金比率(reserve ratios)

比率 9	前年度 正味資産에 대한 1年間 準備金增加率(one-year reserve development to surplus)	25% 이상
比率 10	前前年度 正味資産에 대한 2年間 準備金增加率(2-year reserve development to surplus)	25% 이상
比率 11	正味資産에 대한 現年度推定 準備金不足額比率(estimated current reserve deficiency to surplus)	25% 이상

最近에 美國 下院의 “에너지 및 通商委員會”(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의 John Dingell委員長은 지난 4년간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새로운 保險會社支給能力監督法案에 의하면 保險會社 자신이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州政府로부터 支給能力에 대한 감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聯邦保險支給能力監督機關(Federal Insurance Solving Commission : F.I.S.C.)의 감독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NAIC의 William McCartney 會長은 이 法案에서 명시하고 있는 2元監督制度는 은행업과 저축대출조합의 파산사례에서의 책임전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NAIC는 保險會社에 대해 최저 기준을 州政府가 부과하는 州監督制度의 개선안을

5) NAIC, Insurance 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Ratio Results—1990, Kansas, 1991. pp.1~28.

마련하고 있다.⁶⁾

나. 英國

英國의 保險監督法에서는 保險料率과 保險約款의 결정에 대해 保險會社가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하며, Solvency Margin만 유지하고 있으면 資產運用은 經營者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保險擔保와 그 保險料에 대해서 광범하게 선택할 수 있고, 保險加入者를 보호하기 위해 保險會社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財務狀態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 主務官廳은 保險會社로 하여금 계산서, 대차대조표, 보고서와 기타 保險會社가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서류 등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며, 保險會社는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들 서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英國은 EC會員國이므로 앞으로 EC의 保險關係規程의 적용을 받는데, 이번에 EC의회의 주장에 따라 EC위원회와 원래 제안서에 수정을 가하여 보완하게 된 부분의 주요항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貸借對照表에 있어 특정계정과목의 統合(현재 責任準備金에 대해서는 除外됨)
- 再保險의 處理
- 投資收入과 經費의 公開
- 投資에 대한 未實現損益의 公開
- 計定에 대한 주석

또한 상위에 있는 손·생보경영사의 1991年度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것은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保險會社들이 재무상 곤란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業體들이 경영상의 타격을 받고 있어 많은 保險會社에서는 종업원들을 해고하면서 감량경영을 취하고 있다.

다. 日本

여러 차례에 걸쳐 保險審議會에서 제시한 答申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資產運用體制의 정비와 충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損保社에서는 財務部門의 強化와 充實을 도모하고 있다.⁷⁾ 즉, 기구개혁에 따라 資產運用全般에 걸친 綜合調整機能을 갖는 部門을 설치하는 한편, 자산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종래의 財務部를 有價證券部와 融資部로 분리하는 등 그 機能의 세분화를 실시하고 있는 損保社도 있다.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人材를 특채하는 등 資產運用部門의 인력증강과 육성을 실시하였고, 국내외의 投資子會社와 投資顧問會社 등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財形商品의 直入金制度를 도입한 것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몇가지의 制度 施行을 결정하였다.

1990年 5月 16日에 保險審議會 合同委員會에서는 전년도 10월부터 협의해온 保險産業이 수행하여야 할 役割이라는 제목으로 된 심의결과에 대해 요약한 報告書를 내놓았다.

6) Business Insurance(April 13, 1992).

Insurers Face National Regulation under Bill, Post Magazine, Vol., 153 No.18(April 30, 1992). p.6.

7) 日本保險審議會에서는 1987年 5月 19日에 제 47총회를 개최하여 損害保險部가 1년간 걸쳐 심의해온 結果를 「새 時代를 맞이하는 損害保險事業의 姿勢」로서 종합하여 대장대신에 答申內容 중 一部로 자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資産運用과 財務管理에 관한 내용만을 살펴보면, 同 委員會에서는 保險産業의 基本적 機能이 危險을 担保하는 것이지만 貯蓄수단을 제공하는 機能을 부수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保險會社는 그들에게 맡겨진 保險料를 투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광의의 保險産業 觀點에서 보면 保險會社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企業 등에게 積적된 保險基金을 공급해 줌으로써 금융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내외의 金融市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觀點에 비추어 投資行爲에 관한 諸般法規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특별히 유의할 점은 投資危險管理를 보다 더 강화하고 保險者의 金融적 地位를 개선함으로써 健全한 財務管理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 獨逸

保險會社의 資産投資 方針은 정관기재사항이고, 정관은 사업계획서의 일부로서 제출해야 되므로 이 方針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의 사전심사를 받는다. 保險會社의 資産投資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규제는 2가지로 나눈다. 즉, 規制資産은 책임준비금 자산에 의한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同一會社 資本의 10%를 한도로 한다. 다만 감독관청에서는 계약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上限을 넘는 투자를 인가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自由資産인데, 이 자산에 대한 投資는 규제자산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 10%를 넘는 비율로 資本參加가 가능하다. 그러나 10%를 넘는 資本參加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損保社의 파산시에는 미경과보험료부분과 파산선고전에 생긴 모든 權利는 제1순위의 債權이 된다.

마. 기타 國家들

어느 國家에서든지 財務狀態의 健全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事實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保險會社의 파산을 예방하고 보험가입자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프랑스에서는 資本金이 법정최저자본금의 1/3 이하로 되었을 때는 資本金復元을 논의하기 위한 株主總會를 소집해야 한다. 핀란드에서는 제2순위의 損保社인 Sampo社가 투자영업수익의 격감으로 인해 1990年 稅前收益이 FMK 7,800만에서 FMK 3,300만으로 57.7%나 감소되어 經營危機가 문제되었다.

IV. 우리나라 損保社의 財務健全성과 保險監督情報시스템의 導入 및 運營方向

開途國들의 經濟事情이 낙후되고 자본력도 부족한 여건에서 利益을 실현하는데 長期間의 經營을 통해서 가능한 호전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保險事業에 投資한다는 것은 상당한 意志와 決斷이 요구된다. 保險業과 같은 모험적인 事業에 손을 댄 保險經營者와 이들을 믿고 保險契約을 맺는 保險加入者 모두가 신뢰에 바탕을 두지 않고서는 保險事業이 영위될 수 없다. 여기에 兩 當業者들을 위해 합리적인 規則을 마련하여 감독하는 公正한 統制者가 있어야 하며, 또 保險會社의 財務狀態가 정상적 軌道를 벗어남이 없도록 하여 발생가능한 被

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1. 制度의 導入背景과 過程

1988年度에 保險會社 중 支給不能狀態에 처한 會社가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어떤 事前豫防措置가 필요하다는 共通된 認識을 기초로 하여 作業班을 구성하여 制度마련을 위한 方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검토하게 되었다. 美國에서 시행하고 있는 IRIS에 대한 조사를 행하면서 우리 나름의 지표를 정했는데, 우리가 채택한 早期警報시스템은 支給能力, 收益性, 成長性의 3부분으로 나누어 대상항목을 모두 19個로 하였다. 여기에서 3부분의 어느 한 部門에서 기준치를 벗어나는 항목이 3개 이상이 되어 모두 9개를 넘으면 조기경보를 발한다. 물론 이 制度의 施行 이전 과거 3년간의 數値를 대입하여 檢證을 거쳤다. 운영하는 方法은 각 항목에 대한 財務比率分析을 통해 支給不能이 우려되는 會社에 대하여 對策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검사업무 사전분석에도 활용하게 하였다. 실제로 이 제도가 施行된 때는 1989年 6月이었다.

그러나 1990年 6월에 조기경보항목에 대한 增減調整이 있었다. 즉, 3개 항목이 삭제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評價項目은 18個로 되었는바 支給能力이 7個項目이고, 收益性이 5個項目이며, 또 成長性이 6個項目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警報制度는 효율적인 財務管理를 유도하여 企業經營을 合理化시키는 利點과 함께 保險產業의 公共性을 強化시키는데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2. 制度의 運營現況과 改善方案

가. 運營上 問題點에 대한 檢討內容

앞서 검토한 早期警報制度에서의 分析項目中 다

수가 保險會社 經營評價의 項目들과 중복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2가지 制度에서 시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保險經營을 정상적 궤도에서 움직이게 하는데 있다. 유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과 作業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制度를 統合·運營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保險會社의 經營評價는 「損害保險會社의 經營效率化 指針」 중 “Ⅲ. 경영체제에 관한 事項 4. 保險資產運用의 效率化”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다. 여기에서 규정한 內容을 보면 保險資金의 運營방향으로는 保險資金은 국민경제의 發展을 위해 산업자금으로 운영해야 하고 이 資金은 중소기업과 서민계층에 적당하게 配分·運用되어야 하며, 자산운영은 최대한 自律性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運營資產 중 收益性이 적은 투자자산 등을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資產의 效率性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保險會社의 經營評價에 있어서 社別로 준비금의 적립수준과 평가방법이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며, 相對評價를 행하는 項目들이 있다. 또한 평가지표가 되는 部門이 7個이고 등급도 5등급으로 되어 있어 많은 편이었다. 평가항목 중 一部指標의 표준치를 조정해야 할 問題點들도 있다.

이 밖에도 활용도에 관한 事項들이 있다. 이 制度의 도입·적용이 일천하여 경험축적이 적으므로 당분간은 간혹 시행착오가 있을까 우려되지만 실무면에서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 그 內容을 검토하고 있다.

나. 改善方案

지금까지 드러난 問題點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몇가지의 改善方案을 필자의 私見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經營評價基準에 관한 改善策으로는 자산의 評價方法이 상이한 경우는 이를 찾아내어 同一基準으로 평가되도록 수정해야 하겠다.

둘째로 현행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하여 施行하고 있는 方法을 절대평가에 의한 方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7개 部門의 評價를 축소시키고 財務管理와 관계가 적은 항목에 대한 評價는 폐지하는 方向으로 검토·연구하여야겠다. 또한 평가항목별 等級數를 줄이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새로운 指標에 대한 발굴과 함께 評點 부여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 재고하여 評價項目이 현재 모두 34개로 되어 있는데 項目이 너무 많은 편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유사항목의 정리가 요구된다.

넷째로 一部指標의 標準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평가를 채택할 경우에 표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많은 研究檢討를 요한다.

다섯째로 經營評價의 結果에 대해 活用度가 광범위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經營評價의 活用문제와 관련하여 早期警報시스템을 평가결과에 연계시켜 조치하는 方案을 마련하여 業務의 生産性を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맺는말

여기에 論及한 保險企業의 財務狀態에 대한 健全性 確保問題와 早期警報시스템 내지 保險監督情報시스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줄곧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事案은 이들 問題에 대해서 保險企業

經營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사전예방 노력을 쏟아야 할 분야로서 保險事業의 經營分析에서는 第1의 課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들 問題에 대한 감독행정 介入限度와 範圍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들 事案은 保險産業에 대해서 행사할 監督限界와 관련되는 것으로 公共性を 띠는 保險産業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事項인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소규모의 事業體에서 활용되는 信用分析이 주로 銀行 등의 與信業務를 처리하는 金融機關에서 시작되었으나 保險産業은 물론 다른 産業分野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지금은 經營分析을 기초로 하는 企業信用評價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信用評價는 경제환경과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에 입각한 企業의 信用度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保險業界에서는 이들 經營分析技法이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이 分野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상당한 期間에 걸쳐 評價項目과 內容, 그리고 配點比率 등에 대해 계속해서 補完修正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制度의 施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부딪치는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나 연구·노력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制度施行을 위한 方案을 마련하는데 있어 發想에서부터 施行때까지 너무나 촉박한 일정을 잡고 있어, 實施한 후에 계속해서 빈번한 修正作業이 필요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人力과 時間의 낭비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여기에서 論及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처음 시행한 美國에서도 계속해서 상당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간단한 問題가 아닌가 싶다. 특히 會計制度가 아주 다른 우리나라에 이 制度를 移植하려는데 나타난 여러 가지 副作用이 있음에 비추어 美國의 保險會計시스템에 대해서 研究하면서 이 制度에 관하여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작업이 先決된 후에 制度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따라서 制度의 조기정착을 시도하려면 이에 대한 회계제도와 이론에 정통한 직원을 감독원 내에서 선발하여 이 작업을 전담시켜야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 保險業界에서도 이 制度가 차신의 經營활동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크기 때문에 작업에 적극참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